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현장 일용잡부가 근무시간에 현기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상병명 “심방세동, 좌측 전도로의 완전폐색,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생한 경우

(86-109호 '86.6.23.기각)

##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인천직할시 남구 간석2동

성명: 박 ○ ○

소속: (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 안양출장소장

###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노동부 수원지방

사무소 안양출장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6.3.10.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재해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주)○○○가 시공하는 과천 국립현대미

술관 신축공사 현장 일용 잡부로 '85.12.1. 09:00 경 근무시간에 현기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증세가 발증한 이때 증세가 악화되어 '85.12.6.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경유 서울대학교병원 에 후송된 후 상병명 “심방세동, 좌측전도로의 완전폐색, 확장성 심근병증”이 진단되어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 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자문의 소견과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심방세동 좌측전도로의 완전폐색 확장성 심근병증이 직업과 관련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직종은 1) 방사선을 사용하는 직종 2) 동물을 사육하는 직종 3) 과도한 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단순한 노동과 관련하여 발병된 경우라기 보다는 기존질병이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또 청구인의 근로형태는 하절기 1일 10시간 30분, 동절기에는 8시간 30분동안 근무하여 출근일수 및 연장근로 시간을 보아도 과도한 노동이 요구될 정도의 근로로 볼 수 없어 업무와 무관한 업무의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원래 교직 및 행정직에 종사하다가 9개월간에 걸쳐 1일 12시간씩 불규칙하게 강행된 노동으로 인하여 동 상병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산재요양 승인을 요구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 “심방세동, 좌측전도로의 완전폐색, 확장성 심근병증”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6.5.9. 박 ○ ○)

2. 원처분청 의견서('86.5.26. 노동부 수원 지방사무소 안양출장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6.4.18. 임○○)
4. 업무협조 요청 회신문('86.2.18. 지방공사 인천병원장)
5. 업무협조 요청 회신문('86.3.3. 서울대학교병원장)
6. 요양신청서('85.2.4. 박 ○ ○)
7. 소 견 서('86.1.5. 서울대학교병원장)
8. 진술조서('86.2.12. 오○○, 박○○)
9. 근로계약서('85.4.6. 박○○, 나○○)
10.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85.4.6. 부터 (주)○○가 시공하는 과천 현대미술관 신축 공사장에 잡역부(일당 7,500 원)로 취업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85.12.1. 09:00 경 작업현장에서 현기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증세가 발증하여 '85.12.6.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경유 서울대학교병원 에 후송된 후 상병명 “심방세동 좌측전도로의 완전폐색, 확장성 심근병증”이 진단되자, 업무에 기인한 상병이라며 산재요양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 청구인이 발병후 최초 입원한 지방공사 인천병원 소견서를 보면 상병명이 “심실성 빈맥증”으로 진단되었고 이 환자는 '85.12.5. 20:30 의식 소실 및 현기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심장기능 검사결과 심실성 빈맥증으로 진단되어 전기쇼크 치료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12월 6일 이송하였다는 내용이며,

둘째 :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 소견에 대한 회신서를 보면,

- 1) 진단 상병명이 “심방세동, 좌측전도로의 완전폐색,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되었고,
- 2) 그 원인에 있어서 “심방세동”은 심방의 염증과정 또는 침윤과정, 심방확장(심실

확장, 심실압력, 방실판막협착) 폐색전, 갑상선 기능항진, 승모판막 질환 등에 의하여 발병되며, “좌측 전도로의 폐색”은 심근경색증, 선천성에 의한 것이며 “확장성심근병증”은 가족적, 감염성(바이러스 원충성 박테리아성), 대사질환, 침윤성 질환 결핍증, 고원성, 신경근육성, 독성에 의한 것이며, 이 환자의 경우 산재로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내용이고 어떠한 원인인든 직장과 관련되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는 소견이며, 단지 동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직장으로서 (1)방사선을 취급하는 경우와 (2)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3)과도한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 들이나 청구인의 경우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직종이 아니고 단순

노동이며,

세째 : 근로형태를 보면 하절기에는 07:00 - 19:00 동절기에는 08:00 - 18:00로 점심시간(12:00 - 13:00) 및 간식시간(15:00 - 15:30)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하절기 10시간 30분 동절기에는 8시간 30분 정도로 동 상병이 유발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노동으로는 볼 수 없다.

이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 “심방세동, 좌측전도로의 완전폐색, 확장성심근병증”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원처분청이 업무의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 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 ○○건설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상병명 “심실충격분리 및 방실판막 전도 장애”가 발생한 경우

(85-7 호 '85.2.18. 취소)

###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성명 : 김 ○ ○

소속 : ○○건설(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 주 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이 '84.12.20. 자 “김○○”에 대하여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4.12.20.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84.12.2. 화계국민학교 변소 증축공사 현장 3층천정에서 위생설비작업중 바닥에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상병명 “심실충격분리 및 방실전도장애”로 요양중에 있는 자로 동 상병에 대하여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 9조의 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이 “저혈압 부정맥, 흉부동통, 강심인공 심박동기 유치 방실전도 장애가 계속되면 인공심박동기가 필요하다”로 되어 있으나, 자문의는 “병명으로 보아 산재가 아닌 지병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므로 자문의 소견에 따라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3층천정에 주철관 설치작업중 주철관을 안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가슴에 심한 충격과 타박상으로 인하여 “심실충격분리 및 방실전도장애”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요양신청한 상병명 “심실충격분리 및 방실전도장애”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5.1.17. 김 ○ ○)
2. 원처분청 의견서('85.1.24. 노동부 서울 북부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5.1.10. 송○○)
4. 요양결정 결의서('84.12.20.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5. 초진 소견서('84.12.2.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장)

6. 소 견 서('85.1.17.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심장전문의 박○○)

7. 문 답 서('85.2.7. 정○○, 김○○)

8.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의 쟁점인 “심실충격분리 및 방실전도 장애”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 청구인이 '84.12.2. 화계국민학교 변소증축공사 현장 3층천정에 사다리를 놓고 주철관 배관작업중 바닥에 추락하여 타박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원처분청이 공히 인정하는 사실로 상반된 주장이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A형 사다리 위에서 바닥에 떨어질때 지름 10미리미터 길이 1미터 무게 18키로그램의 주철관을 안고 뒤로 넘어진 사실이 현장에서 목격한 동료근로자 “김○○, 정○○” 등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둘째 : 청구인이 추락사고를 당한 직후 '84.12.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에서 초진결과 “심장심실 충격분리 및 방실전도장애”의 상병이 바로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 청구인에 대한 동 병원내과 및 심장전문의사인 “박○○”의 소견이 “본 환자는 흉부에 심한 타박상 후에 '84.12.2. 본원에 입원한 후 심전도의 지속관찰 하였으며 심전도상에 방실전도장애(때때로 2,3 도중증장애)를 보였음.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실간 중격(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벽)이 종적으로 약 4센치미터 찢어져 있으며 이 균열을 통하여 심실과 사이에 통로가 생겨 벌어져 있고 이 병변은 상기 부정맥(심실방실 전도차단)을 설명하기 충분함 심근효소의 측정결과에도 심장근육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음이 밝혀졌으며 3도이상의 심장전도장애는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인

공심장 박동기의 삽입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으로서, 심실간의 충격이 4센치미터 정도나 피열 및 균열되어 있고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심한 상태로 외부의 어떠한 충격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병으로는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요양신청한 “심장심실 중격분리 및 방실전도장애”는 '84.12.2. 화계국민학교 공사현장 3층에서 A형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

지면서 공사에 사용하던 무게 18키로그램의 주철관을 안은채 뒤로 넘어짐으로써 심장에 충격을 받아 병발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상병명 “심실 중격분리 및 방실전도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회 원 가 입 안 내

당 협회에서는 신규회원을 모집하오니, 산업보건에 종사하시는 분 및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회원에 가입토록 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자질향상은 물론 동 사업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원 자 격

#### ☞ 정회원

- 사업체의 보건관리자(의사)
- 연구기관에서 산업보건을 조사 연구하는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산업위생 보건담당자
- 1급 산업위생 관리기사 또는 환경기사와 2급 산업위생 관리기사 또는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산업위생 보건담당자
- 간호원 면허소지자로서 사업장 건강관리 보건담당자

#### ☞ 준회원

-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의 보건담당자

### 회 원 사 업

- ☞ 산업보건에 관한 학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참여
-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참여
- ☞ 산업보건에 관한 법령, 기술, 정보, 자료의 활용
- ☞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계획 상담 지도
- ☞ 근로자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상담 지도
- ☞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사내교육 상담 지원
- ☞ 기타 회원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회 비

- ☞ 입회비 : 10,000 원
- 연회비 : 보건관리자(의사) 40,000 원
- 연 구 직 20,000 원
- 보건담당자(간호사, 산업위생기사) 20,000 원
- 준 회 원 20,000 원

### 회 원 등 록

본부 및 해당지부에 본회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